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
----------	-----

제출년월일 : '96. 12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과세기준이 표준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고,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산정 할 때 과세표준시가로 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2항).
- 나. 주차장 정비지구 용어의 삭제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운동시설 면적 120㎡당 1대, 위락시설중 유흥 음식점 시설면적 50㎡당 1대와 기타지역은 시설면적 80㎡당 1대,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 면적 80㎡당 1대로 강화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1) 주차장법 제8조 제2항(노상주차장의 관리)
 - (2)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세표준)
 - (4)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공시지가의 적용)
- 나. 입법예고 : '96. 11. 19 ~ 12. 8(20일간) 의견 없었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 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정하는방법
제1항제1호이외의비영리공익법인과민자유치로주차장을 설치한자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노상, 노외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25/1000이상 -하상주차장은 인근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7/1000이상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 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3조의 제목중 “주차장 정비지구” 및 본문중 “주차장 정비지구 및”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3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개실당 1대 +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부대 시설 면적 3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20㎡당 1대
의료 시설	종합 병원	2병상당 1대로 신성한 대수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신성한 대수중 많은대수
	기 타	시설면적 120㎡당 1대
운동 시설	공공장	1홀당 10대
	골프 연습장	2타석당 3대
문화 시설	국회수당장	정원 10인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20㎡당 1대
전통 문화 시설	운동경기 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판매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 면적 6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 락시설을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시설 면적 5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 공연시설, 장고시설(냉동, 냉장창고를제외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
관련 생활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지 130㎡당 1대를 더한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건축연면적 100㎡당 1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한다)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00㎡당 1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한다)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신.구 조문대조표



원	행	개	징	인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생략)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생략)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인행과선유)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인행과선유)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인행과선유)			
제1항의 규정대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를 적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대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를 적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대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를 적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대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를 적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대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를 적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신청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구 분	신청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경우	수위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노상, 노외주차장은 인근토지가격(과세표준식가)의 7/100 이상주차장은 인근토지가격(과세표준식가)의 2/100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 제1호 이외의 경우	수위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노상, 노외주차장은 인근토지가격(개발공시지가)의 25/1000이상 하상주차장은 인근토지가격(개발공시지가)의 7/1000 이상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3조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실계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및	제13조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실계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및	제13조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실계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및	제13조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실계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및	제13조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실계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및			
제13조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실계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및	제13조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실계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및	제13조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실계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및	제13조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실계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및	제13조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실계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및			



행	개	정	인
<p>도시전계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총 대수의 단수기 1대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1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건축물대수 기 1대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유하지 아니한다</p>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시설종류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내용, 제외시설종류	시설종류	설치기준
관람 및 전시 시설	운동경기 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전시시설, 관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정보시설 (방송, 영상장치 포함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8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면적 80㎡미만인 시설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80㎡미만인 시설을, 산업지역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을
관수 시설	관할시설, 비스미미인 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관수시설, 관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정보시설 (방송, 영상장치 포함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당 1대
	기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320㎡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중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건축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건축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다한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판매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당 1대	판매시설, 관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정보시설 (방송, 영상장치 포함 제외한다)	건축면적 100㎡당 1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시설면적 60㎡당 1대		시설면적 100㎡당 1대
위락 시설	유흥용식당	시설면적 60㎡당 1대	위락시설, 관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정보시설 (방송, 영상장치 포함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중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8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시 설 명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량 제외시설기준
입부시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시설면적 8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0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 면적 80㎡미만의 시설물, 상업 지역의 외곽의 경우: 면적 300㎡미만의 시설물
중요시설, 전기시설, 통신·화력 시설, 방호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 면적 80㎡미만의 시설물, 상업 지역의 외곽의 경우: 면적 300㎡미만의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 면적 120㎡미만의 시설물, 상업 지역의 외곽의 경우: 면적 300㎡미만의 시설물
단독주택	건축면적 200㎡이하는 1대 건축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초과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150㎡미만의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면적 100㎡당 1대	100㎡미만의 건축물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의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 면적 600㎡미만의 시설물

관 련 법 규

○ 주차장법('95. 12. 29 법률 제5115호)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②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96. 6. 4 대통령령 제15017호)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지방세법('95. 12. 6 법률 제4995호)

제111조(과세표준) ②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95. 12. 29 법률 제5108호)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